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해야생동물을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6609호, 2019. 11. 26. 공포, 2020. 11. 27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만원,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더목부터 코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토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 오목 위반행위란 중 “부착하지”를 “붙이지”로 하며,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 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8 호의2	50	100	100
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생물다양성과	
연 락 처	(02) 770 - 7248